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305
----------	------

발의연월일 : 2017. 8. 1.

발의자 : 조승래 · 이해찬 · 송옥주

정춘숙 · 백재현 · 추미애

이용득 · 김정우 · 유은혜

김민기 · 김병욱 · 고용진

안민석 · 윤관석 · 김해영

권칠승 · 박경미 · 홍의락

오영훈 · 박정 · 박남춘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 법률에서 특별자치시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고, 특별자치시를 법률에 명기하여 권한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에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개정하려

는 것임(안 제62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다목).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다목 중 “특별시·광역시·도”를 각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2조(권한쟁의심판의 종류) ①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정부와 <u>특별시·광역시·도</u>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생략)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u>특별시·광역시·도</u>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생략) 다. <u>특별시·광역시·도</u>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 ② (생략)</p>	<p>제62조(권한쟁의심판의 종류)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u>----- ----- 나. (현행과 같음) 3. ----- ----- 가.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u>----- ----- 나. (현행과 같음) 다.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u>----- ----- ② (현행과 같음)</p>